

1 산업안전보건제도

가 산업안전보건 개요

○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과정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몽골에서는 1990년 이후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문제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법적 체계의 확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7년 이후 부터 집중적으로 재해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04년에는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의 개선이고, 둘째는 산업안전정보시스템의 개선이며, 셋째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99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5조 협약을 비준하고, 이 비준내용에 적합한 노동법의 제정을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개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16개 조항이 재정되었습니다. 노동법의 제6장 또는 제81조부터 제99조까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작업환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은 사업주가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 공장, 기계, 장비, 보호구, 소방안전 및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실행,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기록유지, 산업재해나 화학물질과 직업병에 기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 법령

○ 몽골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까?

몽골은 1999년 노동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무와 역할, 단체협약,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근로조건, 노동위원회의, 벌칙조항 등을 골자로 총 14장 142개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노동법 제6장 제81조 내지 제99조까지 19개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 5월 22일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총 9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 5월 22일 제정된 몽골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장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산업안전·보건 관리기관의 조직, 권한 및 제정

제5장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제6장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의 조사 및 보고

제7장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감독

제8장 산업안전·보건 위반자의 처벌

제9장 기타사항

이 법 전문은 【첨부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몽골 노동법(1999년, 2003년 개정)
- 몽골 산업안전보건법(2008년, 2015년 개정)
- 사회보장법
- 정부 관리법
- 행정책임법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1998)

○ 몽골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칙과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업재해 및 급성독성 신고 지침
- 조기퇴직이 필요한 업종과 작업환경
- 개인보호구 및 보호의 관련 목록
- 유해화학 물질 중독 예방 제품 및 식품 목록
- 연간 건강진단 관련 사업주 지침
- 여성에 대한 금지 작업 목록
- 건설업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지침
- 개착식 광산 안전지침
- 굴착식 광산 안전지침
- 사용 금지 및 제한 화학물질 목록
- 유해위험 화학물질 목록
- 기타 산업안전보건 일반기준, 육체 위험요인 관리 기준 등 30여개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있습니다.

○ 몽골에서는 어떤 정부기관이 있으며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4장 21조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확립 및 시행
-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을 위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외국 및 국제기관 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체결, 해제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확립 및 시행하기 위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홍보와 통계기관의 설치 및 규정
- 유관기관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분석·조사 수행
-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관한 규제 제정
- 기타 법령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 시행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ur)에서 수행하며 부총리 산하의 전문감독원(GASI,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지방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 및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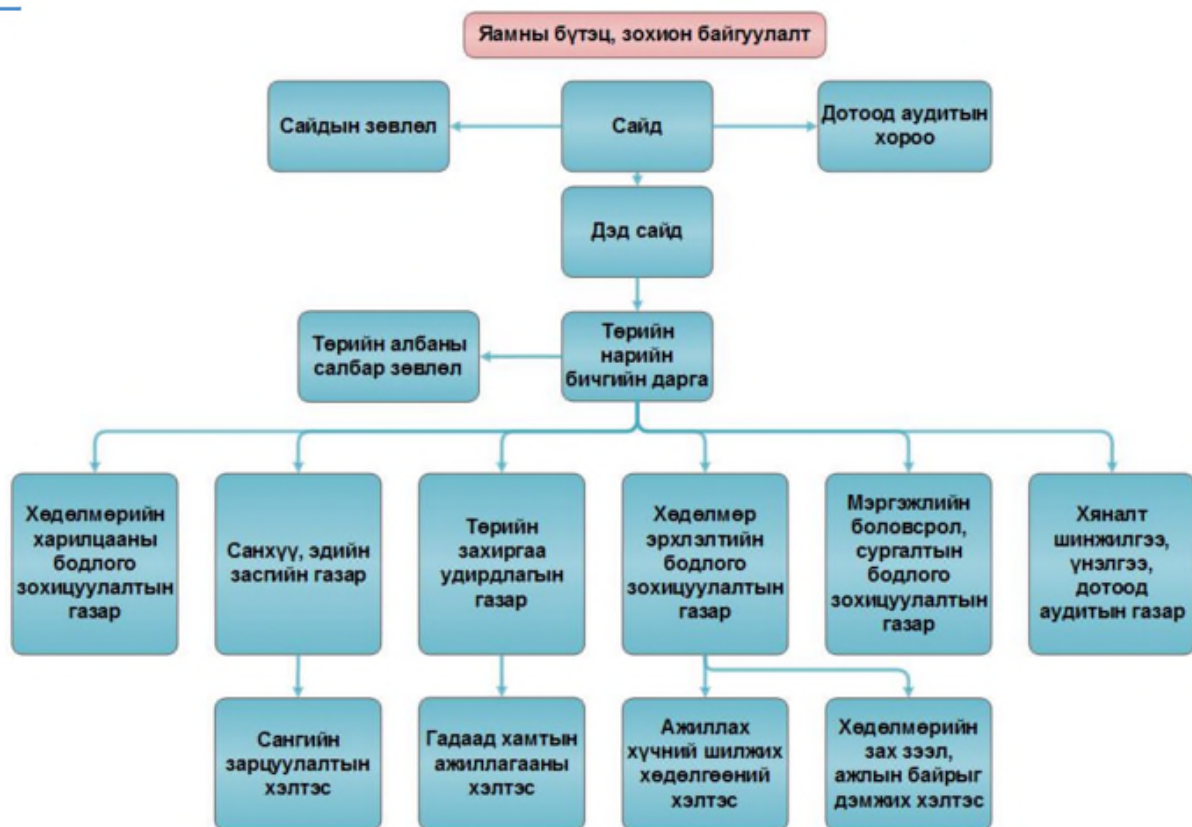
○ 노동부의 기능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 직업 교육훈련 정책 및 관련 법규 집행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 및 시행

○ 노동부의 조직

노동부의 조직은 노동관계정책조정국, 금융 및 경제국, 행정관리국, 고용정책국, 직업교육훈련정책조정국, 감사평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고용서비스, 연구 및 정보센터와 산업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노동관계정책조정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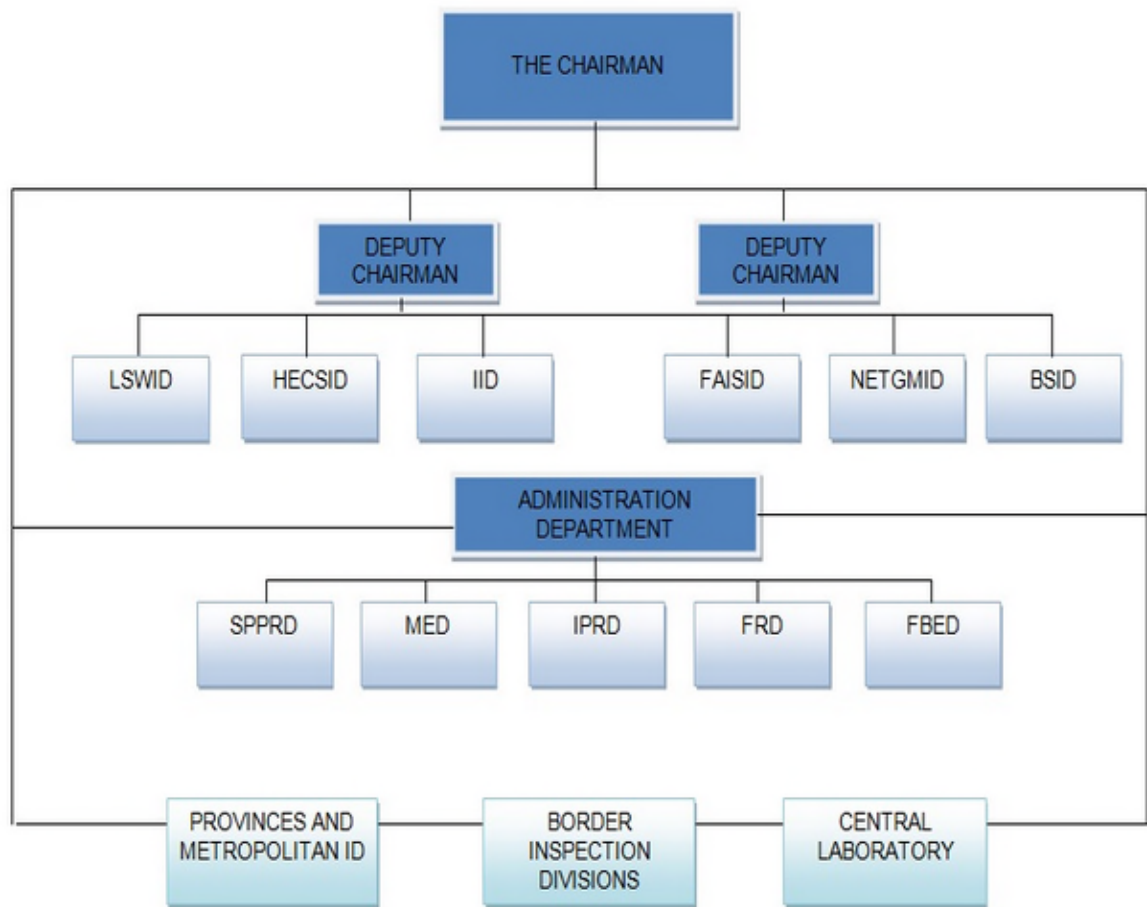


● **Круга тусгай хяналт(GASI)**

o **Круга тусгай хяналтын үндэс**

- **хууль болон тусгай хяналтын зурвас** дээр тодорхойлогдох тусгай хяналтын хяналт
- **хүн амын** хяналт, **хүний ажил**, **хүний ажил** дээр хяналт, **хүний ажил** дээр хяналт
- **хүний ажил** дээр хяналт, **хүний ажил** дээр хяналт, **хүний ажил** дээр хяналт

o **Круга тусгай хяналты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 LSWID : 노동·사회복지감독부(Labour and social welfare inspection department)

○ 노동·사회복지감독부 업무

- 정부의 특정 감독관리 법규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사회복지 분야 감독 실시
- 전문기술 지원과 감독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및 역량 개발
- 전문 감독을 위한 기준, 규정 개발·제정 및 집행
- 양질의 감독 업무 제공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제거

○ 국가 전문감독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무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준수 감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신고
- 역학조사
- 건설현장 감독 실시
- 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화학물질 취급, 급성

중독, 고령근로자, 인간공학, 화학물질, 육체적, 생물학 및 심리적인 분야의 작업환경 관련 요인 감독과 개인보호구 및 장비에 대한 감독을 실시

○ 국가 전문감독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수

감독기관	계	GASI	울란바타르 시 감독관	GASI 지방 사무소
계	102	3	36	63
근로 감독관	63	2	30	3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39	1	6	32

● 국립산업보건연구원

- 국립산업보건연구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과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독성 및 고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기준 제안 및 자문 실시, 직업병 조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감시, 진단, 치료 및 재활 실시
- 국립산업보건연구원은 몽골 사회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경영부, 직업병 및 작업환경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79명이 근무함

● 사업장 환경 시험 및 분석 센터(Workplace Environment Testing and Analizing Center)

- 2009년 설립이후 사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위한 평가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기타 몽골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몽골 국립 의과대학
- 몽골 표준측정센터
- 몽골 경영자 총연맹
- 몽골 노동자 총연맹
-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나 산업재해

○ 몽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주로 어떤 업종 또는 작업에서 발생합니까?

몽골의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ur)의 발표에 의하면, 산업재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재해자 363명, 사망자 56명으로 전년 대비 재해 사망자는 9.8%증가하였으며 '10년도 이후 광업과 건설업의 활성화로 추락, 붕괴 등의 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12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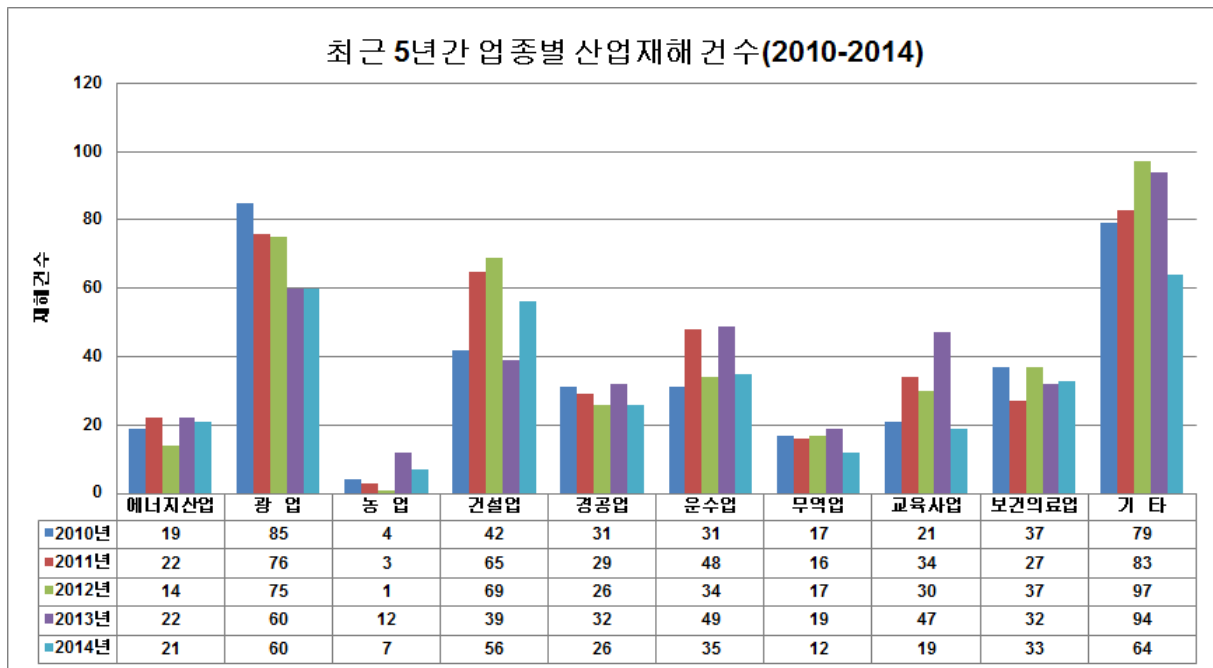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재해발생건수(건)	400	406	333
재해자수(명)	424	425	363
장애자수(명)	35	210	26
사망자수(명)	87	51	56

※ 몽골의 산업재해건수에는 업무상 질병발생건수가 포함되지 않음

2012년 이후 2014년 까지 몽골의 산업재해발생 건수와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등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면 광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광업은 전체 재해자의 18.5%, 건설업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건설업종에서 21명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업에서 발생한 재해원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흡과 작업도구 및 장비의 결함과 추락·붕괴가 전체 재해원인 중 58.3%가 발생되었고 건설업에서는 추락과 붕괴가 전체 재해원인의 46.4%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2년-2014년)

구 분		계	에너지	광업	농업	건설	경공업	교통통신	무역·서비스	교육	의료	기타
재해 건수	2014	333	21	60	7	56	26	35	12	19	33	64
	2013	406	22	60	12	39	32	49	19	47	32	94
	2012	400	14	75	1	69	26	34	17	30	37	97
재해 자수	2014	363	22	67	7	65	26	35	14	19	39	69
	2013	425	25	64	12	41	32	49	19	48	33	102
	2012	424	14	91	1	72	26	35	18	30	38	99
사망 자수	2014	56	1	10	0	21	0	4	3	0	0	17
	2013	51	3	14	0	14	1	8	1	2	3	5
	2012	87	4	33	0	28	1	2	0	2	2	13
장애 자수	2014	26	3	3	1	7	5	3	0	2	1	1
	2013	210	11	29	7	18	11	22	10	2	3	58
	2012	35	2	8	0	10	3	2	1	1	1	7

업종별, 근무기간별 재해자수(2014년도)

구 분		계	에너지	광업	농업	건설	경공업	교통통신	무역·서비스	교육	의료	기타
근무기간	계	366	21	67	7	64	26	35	19	19	39	69
	5년이하	159	12	31	5	48	16	18	4	4	7	14
	5~15년	88	2	19	1	8	6	11	4	4	10	23
	15년이상	119	7	17	1	8	4	6	11	11	22	32

업종별, 사고원인별 재해자수(2014년도)

구 분		계	에너지	광업	농업	건설	식품	교통통신	서비스	교육	의료	기타
사고원인	계	333	21	60	7	56	26	35	12	19	33	64
	추락·붕괴	63	3	11	1	26	3	7	2	3	3	4
	운송장비결함	56	2	9	1	2	2	8	1	3	5	23
	리프트기계결함	10	0	1	0	7	0	1	1	0	0	0
	장비·설비결함	37	2	12	2	6	4	4	0	1	3	3
	안전기준위반	14	2	2	0	2	1	5	0	1	1	0
	안전작업태도부족	49	4	12	2	7	12	4	3	1	1	3
	보호장비결함	6	0	0	1	1	2	0	1	0	0	1
	기타	98	8	13	0	5	2	6	4	10	20	30

산재재해 발생현황 분석표(2012년~2014년)

가로 페이지로 제작

구 분		연도별 합계			업 종																													
					전 력			광업			농업			건설업			경공업			도로교 통			무역· 서비스			교 육			의료			기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산업재해건수		40	40	33	14	2	2	7	6	6	1	1	7	6	3	5	2	3	2	3	4	3	1	1	1	3	4	1	3	3	3	9	9	6
다중재해		1	1	1		2	1	8	3	4				2	2	6				1			1		1		1		1	1	2	1	3	3
재 해 사 수	합계	42	42	36	14	2	2	9	6	6	1	1	7	7	4	6	2	3	2	3	4	3	1	1	1	3	4	1	3	3	3	9	10	6
	여성	11	17	11	1	1	2	2	1	3		3	2	7	5	7	1	1	1	1	1	1	5	5	4	1	3	1	2	2	2	3	4	2
	사망자수	8	5	5	4	3	1	3	1	1			2	1	2	1	1		2	8	4		1	3	2	2		2	3		1	5	1	
	장애자수	3	21	2	2	1	3	8	2	3		7	1	1	1	7	3	1	5	2	2	3	1	1		1	2	2	1	1	1	7	5	1
	노동력손 실	30	16	28	8	1	1	5	2	5	1	5	7	3	9	3	2	2	2	3	1	2	1	8	1	2	1	1	3	1	3	7	3	5
	작업전환	1	0	0																												1		
재 해 경 상 도	사망자수	8	5	5	4	3	1	3	1	1			2	1	2	1	1		2	8	4		1	3	2	2		2	3		1	5	1	
	중상자수	16	21	18	4	1	1	3	2	3		7	5	2	1	2	1	1	1	1	2	1	8	1	5	1	2	9	1	1	2	4	5	3
	경상자수	17	16	11	6	1	5	2	2	2	1	5	2	1	9	1	1	2	6	1	1	1	1	8	6	1	1	1	2	1	1	4	3	2
재 해 자 연령	18세이하	3	1	1									2		1		1															1		
	18세-25세	23	19	18	11	1	1	6	3	3	1	6	5	4	2	4	1	1	1	1	2	2	9	1	8	1	1	5	1	7	1	4	4	2
	35세이하	18	22	18	3	1	9	2	2	3		6	2	2	2	1	1	1	1	2	2	1	9	4	6	1	3	1	2	2	2	5	5	4
재 해 부 양 년 수	5년이하	18	16	13	4	7	1	5	3	3	1	4	5	5	2	4	1	2	1	8	2	1	1	1	4	5	5	4	4	5	7	3	2	1
	5년-15년	12	13	8	7	1	2	2	2	1		5	1	1	7	8	6	5	6	1	2	1	3	5	4	1	1	4	1	7	1	2	3	2
	15년이상	11	12	12	3	6	8	1	9	1		3	1	8	5	8	5	6	4	1	9	6	5	1	1	1	2	1	1	2	2	3	3	3
합계		42	40	33	1	2	2	9	6	6	1	1	7	7	3	5	2	3	2	3	4	3	1	1	1	3	4	1	3	3	3	9	9	6
사 고 위 험 요 인	추락·붕괴	10	7	6	1	4	3	1	1	1		4	1	3	2	2	5	4	3	4	8	7	6	7	2	6	6	3	8	2	3	2	6	4
	운송장비 결함	3	6	5	1		2	1	3	9		1		2	2	1	4	2	4	1	8	1	4	1	1	7	3	3	7	5	6	2	2	
	리프트기 계결함	1	1	1	1	4		4	1	1			8	3	7	1			1	1	1			1					1			2		
	장비·설비 결함	1	2	3	1	2	2	4	4	1		2	2	2	1	6	2	2	4		4	4	1	1		1	2	1		1	3	3	1	3
	안전기준 위반	2	1	1	5	1	2	8	3	2	1	3		5	2	2	4	2	1	1		5	2			1		1			1	1	1	
	안전작업 태도부족	7	4	4	2	2	4	3	1	1		1	2	9	3	7	7	1	1	1	3	4		1	3		1	5		1	1	1	3	
	보호장비 결함	4	7	6		1		1				1	3	1	1	1		2					1		1							3	1	
	기타	16	16	9	3	8	8	1	2	1		2		8	7	5	5	9	2	2	1	6	8	6	4	2	3	1	2	2	2	5	4	3

연도별 몽골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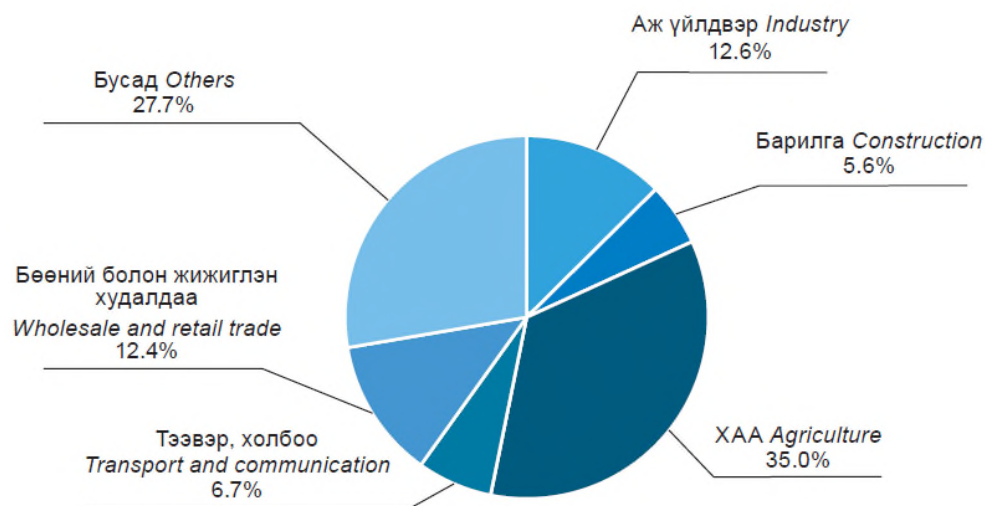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몽골 총 인구	2,716.3	2,716.0	2,811.6	2,867.7
15세 이상 인구	1,853.5	1,863.4	1,798.4	1,812.1
경제 활동인구	1,137.9	1,147.1	1,124.7	1,151.1

업종별 근로자수(2012년말 기준)

Ажиллагчид, салбараар, нийт дүнд эзлэх хувиар
Employees, by industries, percentage share to total

2012



○ 몽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무엇입니까?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의 조사 및 신고의 제 29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며 1주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걸린 개인과 근로자를 자비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필요한 진찰과 검사 비용을 부담하며, 사고와 급성 중독의 피해를 처리하는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취하여야 한다.

정부 명령에 의하여 추가로 제정된 “산업 재해,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작업장 및 부대 작업장에서, 또 계약에 의해, 권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 출장, 동원령에 따라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난 사고
- 본사, 지사, 작업 본점, 지점 사이에 자주 왕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에 모든 종류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또는 보행 중 발생한 사고
- 작업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휴식,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를 끝낸 다음 작업장 및 장비 기계를 정리하다가, 옷 갈아입다가, 샤워를 하다가, 업무를 인수하다가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보행 중 (본 사고를 정할 때 근로자의 집, 작업장 사이의 방향, 시간을 근거로 한다) 발생한 사고
-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자연재해, 방사성 물질 및 화학물질의 영향, 생물학적 활성체의 갑작스러운 재해로 발생한 사고
- 본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기타 기술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생물학적 활성제로 인해 병 또는 중독에 걸린 경우

○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산업재해, 급성 중독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 급성중독의 조사

기록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이막, 수도, 솜(郡), 구청장 1명, 사업주 1명, 근로자 대표 1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주는 위원회가 와서 조사, 분석할 때까지 산업재해, 급성중독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 안에 각 2회씩 전문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양식은 【붙임 3】의 별첨 1「산업 재해,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중대한 사고나 사람이 사망한 산업재해,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의 전문감독청과 경찰국에 「산업 재해,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의 별지 2의 양식(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긴급 통보서)를 작성하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전문감독원에서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정부 감독 및 감사에 관한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각 각 산업재해 및 급성 중독 기록
- 피해자 진술내용 기록, 사망 시 증인 확인서 및 진술내용 기록
- 산재, 급성중독이 일어난 작업장, 설비, 기계 도구 등 설계 배치도, 비디오 테이프
- 산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병원 및 전문 감독평가, 시험실 검사결과
- 산재 및 급성 중독된 근로자에게 그전에 설명해준 안전규칙 복사본
안전교육 수료증
- 안전작업복 및 보호구 제공 복사본
- 산업안전 및 보건담당 직원과 피해자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 관련규칙, 명령, 법률

- 산재 및 급성중독에 대한 급행 통보서
- 사체 검시에 대한 법원 병원평가서
- 기타 요구서류

○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제도가 있습니까?

몽골은 산재보상보험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법에 따라 몽골 사회보험기금은 5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 산업재해 및 질병에 관한 보건의 제도가 있고 사업주는 정부에서 정한 근로자 최소 임금의 1%에서 3%를 매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급성중독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 동 력 손 실 정 도	보 상 금 액
30% 이하	평균 월급의 5개월 분
31~50 %	평균 월급의 7개월 분
51~70 %	평균 월급의 9개월 분
71% 이상	평균 월급의 18개월 분

※ 유족보상금은 평균 월급의 36개월 이상 지급

위험 평가	보험 요율	가입사업장수 (2012년)	가입사업장수 (2013년)
저 위험 사업장	1%	23, 513 (77.5%)	26, 797(75.8%)
중 위험 사업장	2%	5, 353(17.6%)	6, 834(19.3%)
고 위험 사업장	3%	1, 489(4.9%)	1, 742(4.9%)
Total		30, 355	35, 373

다 안전인증·검사 제도

○ 몽골에서 수출품을 포함하여 허가,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호장비 제공)에 따르면 “특별 작업복 및 보호장비의 품질에 대하여 사업주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전문감독원에서 어떠한 감독 및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복 및 보호장비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제정은 “표준화 측량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증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격 번호	규격 명
MNS 4930 : 2000	산업장비 안전기준
MNS ISO 13688 : 2000	작업복 기준
MNS ISO 13994 : 2003	유기화합물용 작업복(기밀시험)
MNS ISO 8194 : 2001	방사능 보호복
MNS 3306 : 1991	귀마개, 귀덮개 등
MNS 5388 : 2004	안전모, 머리 보호구 등
MNS 5389 : 2004	안전모 및 보안경 겸용
MNS 5621 : 2006	안전모, 머리 보호구 등
MNS 5624 : 2006	방진 마스크
MNS 5620 : 2006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MNS 5622 : 2006	손 보호 장갑
MNS 5623 : 2006	다리보호, 안전화 등
MNS 0012-4-007 : 1981	보호 덮개, 난간 등

다만, 기계 및 중장비, 기중기 및 운송 중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이용 초기 실험 및 인증을 전문감독원에서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비 등록증 발급
- 자동차 설비, 중장비 기계 여권, 등록증, 조립 및 설치에 대한 기록 및 설계도
- 작동시 안전규칙 및 사용법(몽골어로)
- 자동차 설비의 실험 및 조절, 작동확인서 및 인수인계서
- 자동차 설비가 작동 중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생명, 건강에 위협하지 않다는 관련 전문기관 확인서, 수출 측의 공식 확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기중기, 운송기계에 대한 요건 충족
- 수수료 납부 : 등록증 발급비 2000 투그릭 및 검사 수수료 등 12500 투그릭

라 위험성평가 제도

- 몽골에 제조공장을 설립할 때 공장에 설치된 기계, 전기, 화재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장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까?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직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경영평가제도(우리나라의 KOSHA 18001)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자료 등을 포함하여 시범적으로 화력발전소 등 대기업(89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타법에 대한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Барилгын тухай хууль 건설법
- Бай галь орчныг тухай хууль 자연환경법
- Галын аюулгүй бай 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화재안전법
-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хууль 에너지법
- Цөмий н энергий н тухай хууль 원자력 에너지법
- Төрий 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ь 공무감독 검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 н нэгж, түүний удирдлаг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자치기관, 지방관리법
- Газрын тосны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тухай хууль 원유 품질법
- Гамшгаас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자연재해보호법
- Ариун цэврий н тухай хууль 소독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광물법
- Хөдөлмөрий н тухай хууль 노동법
- Химий н хорт болон аюултай бодисын тухай 화학 독성 및 위험물질
- Тэсэрч дэлбэрэх бодис, тэсэлгээний хэрэгслий н эргэлтэд хяналт тавих туха 폭발 물질, 폭발 도구감독

라 직업병 등 관련 제도

- 몽골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병이 있습니까?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 발생자는 얼마나 됩니까?

몽골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업병은 1997년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명령서

A/250호에 의거하여 5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노동복지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질병자의 82.1%가 광산 등에서 발생하였고 요인별로는 분진에 의한 기관지염이 45.2%, 신경계통 질환 26.4%, 근골격계 질환 12%,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8.6% 순으로 질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2009년 직업병 발생 통계

단위:명

년도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진 폐	31	1	4	3	4	3	3	1	1	5	6
기관지염	1,585	232	209	133	182	248	170	147	120	124	20
화학물질	301	39	42	27	28	46	29	21	27	36	6
신경계통	928	119	117	96	116	104	87	96	92	82	19
순환계, 근골격계	424	57	66	50	55	72	39	30	31	19	5
이비인후 계통	205	17	25	32	20	27	23	22	10	25	4
방사선관련	25	4	2	1	3	5	4	3	3	0	0
안질환	7	0	2	4	0	0	0	0	0	1	0
계	3,506	469	467	346	408	505	355	320	284	292	60

○ 몽골에서 발생하는 가장 높은 직업관련 질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관련 질환 중 61.5%가 호흡기계 질환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기관지 염증 및 진폐가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질환의 5대 요인(1975~2009)

	질 환 명	건 수	비 율
1	호흡기계 질환	3346	61.5%
2	정신, 신경계 질환	1186	21.8%
3	사고, 중독, 외부 원인	469	8.6%
4	순환기계 질환	220	4.0%
5	근골격계 질환	190	3.5%

작업환경 측정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12개소를 측정하였으며 작업장 공기 오염, 먼지 등 작업장의 분진은 산업안전보건 MNS 5010:2001기준으로 6-10mg/m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탄, 광산, 귀금속광산 및 화력발전소 등 대기업의 경우는 작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기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요청 시에 아이막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